

## VIII. 맺음말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조직법적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의 선택의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를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자본금규제, 각종 행위규제, 손자나 증손회사의 규제 등의 규제를 가하는 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주회사 규제의 기본적 틀은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자체가 미국이나 독일 등 표준적 경쟁법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지주회사가 시장독점이나 경쟁제한적 요인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독금법에 따른 규제를 가하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제가 국제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 감독법규를 관통하고 있는 정책목표로서 일반집중 억제 그리고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입의 규제의 관철 등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은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거나 장려하고자 하는 것을 유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목적상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한적 규제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차원의 정책이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하다. 미국 보험법의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정이나 유럽연합의 관련지침(Directive) 들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여 1999년 제정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제한적 규정과 함께 기존에 은행지주회사로서는 불가능했던 다른 금융업의 겸업이라는 유인(incentive)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은 형태적 간결성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제한적 규정이 압도적인 결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할 만한 내용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주회사체제 채택으로 인한 유인은 고객정보공유(48조의 2) 및 지주회사-자회사간 임원

겸직(39조) 등이 있으나 인력 및 시설 등의 공유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허용이 바람직하며,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체제 내 회사들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보험지주회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재조정과 동시에 기업 자체적으로도 복잡한 계열 지배 관계의 단순화 등 선진화된 지배구조체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집단인 GE 그룹의 경우 모회사인 GE의 100% 출자를 통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또한 중간지주회사의 자회사도 중간지주회사가 100% 출자를 통해 계열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하여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계열사간 출자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계열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출자체계의 중심에 위치해 그룹의 지배력을 안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 전체 그룹경영 구도하에서 보험지주회사가 어떻게 위치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시 계열내 핵심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 약화나 당해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는 그룹 전체에 대한 대주주의 지배력 상실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 또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다른 어떤 비용보다 그룹 전체의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설립 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보험지주회사는 그룹전체의 안정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인 설립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설립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계열사에 대한 안전지분을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의 제거 및

이를 위한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의 타 회사 지배목적 주식보유 제한 등으로 비금융계열사 주식보유가 현행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안전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해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타 회사 지배금지 규제로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의 조정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비금융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최대주주만 아니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 법제적 측면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만일 특정의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 중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처분으로 인해 당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력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 및 산업자회사를 모두 거느리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금융과 비금융을 분리하여 각각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양대 지주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총괄하는 총괄지주회사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검토가 요구된다.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선 은행 또는 은행(금융)지주회사법상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은행산업의 공공성 측면, 산업자본과의 분리원칙에 대한 이견 등으로 향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이다. 미국의 GLB법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업 영위를 제한하고 있어 은행 소유시 산업기업의 영위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은행업 영위시 BIS자기자본규제 등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FRB 등 감독당국의 금융감독도 강화된다. 그러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확대 등 보험지주회사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운영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이 보유한 자원, 고객기반 등을 무기로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이 선도하는 비은행 금융시장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내외국인에 대한 진입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어 시장경쟁자 수가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에 진입하는 대형 외국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해당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 금융영역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내의 제2금융권 회사들의 수익성이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금융시장 경쟁환경으로 인해 금융전업 보험그룹은 물론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제도가 겸업화·대형화의 전략으로 세계 금융산업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제도 운영에 따른 규제가 제도 도입 및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를 둘러싼 현행의 규제시스템은 산업간 균형적 성장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점차 완화되어갈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을 강하게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